

아리야리! 정선
the mecca of arirang, jeongseon

정 선 군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군 보

<http://www.jeongseon.go.kr/>

제516호 2020. 2. 7. (금)

【규 칙】

- 정선군 규칙 제1335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.....2
- 정선군 규칙 제1336호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.....8

□ 발행 : 정선군청 기획실 (전화:560-2213, FAX:560-2592)

규 칙

제1회 조례·규칙심의회(2020.01.23.)에서 의결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0년 2월 7일

정 선 군 수

정선군 규칙 제1335호

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

제1조(「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」의 개정)

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미연에”를 “미리”로 한다.

제2조(「정선군 재무회계 규칙」의 개정)

정선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제4항 중 “정정·도말 또는 개서할”을 “정정하거나, 지워 없애거나 또는 고쳐 쓸”로 한다.

제127조제2항 본문 중 “해득”을 “이해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정정, 도말 또는 개서할”을 “정정하거나, 지워 없애거나 또는 고쳐 쓸”로 한다.

제3조(「정선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」의 개정)

정선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부채 비치)”를 “(장부 비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부채을”을 “장부를”로 한다.

제4조(「정선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규칙」의 개정)

정선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해득”을 “이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사용하거나 도말 또는 개

서할”을 “사용하거나, 지워 없애거나 또는 고쳐 쓸”로 한다.

제86조제1항 단서 중 “가격양등”을 “가격이 오를 것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

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호 중 “내경”을 “안지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제1조(「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)</p> <p>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<u>미연에</u> 방지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13조(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)</p> <p>①----- ----- <u>미</u> <u>리</u>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
제2조(「정선군 재무회계 규칙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<p>제54조(지급명령의 발행요건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<u>정정·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.</u></p>	<p>제54조(지급명령의 발행요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<u>정정하거나, 지위 없애거나 또는 고쳐 쓸</u> ----- -----.</p>
<p>제127조(금액, 수량등의 정정) ① (생략)</p> <p>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, 수량,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·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</p>	<p>제127조(금액, 수량등의 정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<p>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<u>해득</u>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. 다만,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<u>정정, 도말 또는 개서</u>할 수 없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----- <u>이해</u>----- ----- . ----- ----- <u>정정하거나, 지워 없애거나 또는 고쳐 쓸</u> ----- ----- ----- ③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

제3조(「정선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」의 개정)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<u>부채 비치</u>) 문화예술회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<u>부채</u>를 비치하고 기록,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	<p>제9조(<u>장부 비치</u>) ----- ----- <u>장부</u>를 ----- ----- . ----- 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
제4조(「정선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규칙」의 개정)

현행	개정안
<p>제12조(장부의 오기정정) ①장부의 오기 사항은 당해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,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<u>해득</u>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 <p>⑥정정시에는 약품을 <u>사용</u>하거나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.</p>	<p>제12조(장부의 오기정정) ①----- ----- ----- ----- <u>이해</u>----- ----- . ----- 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----- <u>사용</u>하거나, 지워 없애거나 또는 고쳐 쓸 --</p>

□ 제안이유

“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”에 따라,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자치법규 상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정비

조문	조례명	부서
안 제1조	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	행정과
안 제2조	정선군 재무회계 규칙	회계과
안 제3조	정선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	문화관광과
안 제4조	정선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규칙	상하수도사업소
안 제5조	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	상하수도사업소

제1회 조례·규칙심의회(2020.01.23.)에서 의결된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0년 2월 7일

정 선 군 수

정선군 규칙 제1336호

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」” 를 “「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」” 로 한다.

제2조 중 “「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」” 를 “「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」” 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허위” 를 “거짓” 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월50만원” 을 “월100만원” 으로, “3%” 를 “5%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」----- -----.</p>
<p>제2조(상품권의 종류) 「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정선아리랑상품권(이하 “상품권”이라 한다)은 1천원권, 5천원권과 1만원권으로 하되,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상품권의 종류) 「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」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5조(가맹점의 준수사항) ① (생략) ② 군수는 가맹점이 이 규칙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의 대금을 청구한 경우 상품권 가맹점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③ (생략)</p>	<p>제5조(가맹점의 준수사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거짓 ----- -----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상품권이용 활성화 지원) 군수는 상품권을 구입하는 자</p>	<p>제6조(상품권이용 활성화 지원) ----- -----</p>

<p>(법인을 제외한다)가 희망할 경우 1인당 <u>월50만원</u> 이내의 구입 금액에 대하여 <u>3%</u>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하고, 5,000원 단위로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----- <u>월100만원</u> ----- - <u>5%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--	--

제안이유

지역자본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관내에서만 통용 가능한 정선아리랑 상품권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, 상품권 구매 시 포인트 적립 한도액 및 포인트 적립률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

주요내용

정선아리랑상품권 포인트 적립 한도액 및 포인트 적립률 조정(안 제6조)

- 포인트 적립 한도액 : 월 50만원 이내 ⇨ 월 100만원 이내
- 포인트 적립률 : 3% ⇨ 5%